

# 제 안 설 명 서

【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증개정조례(안)】

## 영 주 시

## 영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(안)

의안	
번호	58

제출년월일 : 1999. 5.

제출자 : 영주시장

### 1. 개정이유

영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·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정비를 요하는 조항을 개선·보완 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골자

가. 기금의 재원을 “일반회계의 지원금”에 의하던 것을 “시의 출연금, 기금운용수익금, 기타 수입금”으로 하도록 함 (안 제9조 제2항)

나. 기금은 “세입세출외현금”으로 관리하고, 이율이 높은 방법으로 “금융기관”에 예치 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“세계현금”의 예에 의하여 관리 하도록 하고, “시금고”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 하도록 함 (안 제9조 제3항 및 제4항)

다.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지정함 (안 제10조)

○ 기금운용관 : 생활보호업무 담당국장

○ 기금출납원 : 생활보호업무 담당주사

라.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,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(안 제11조)

3. 개정조례(안) : 덧붙임
4. 신·구조대비표 : 덧붙임
5. 참고자료 : 덧붙임
  - 관련법령(발췌) 1부
  - 읍·면·동별 장학금 지급현황 1부

## 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증개정조례(안)

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및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

제9조(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) ①시장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·지원하기 위하여 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

②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,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,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

③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하고,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내에서 지출한다

④기금의 수입·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

제10조(회계공무원)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

1. 기금운용관 : 생활보호업무담당국장

2. 기금출납원 : 생활보호업무담당주사

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

제11조를 제12로 하고,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제11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

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 표

【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(안)】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) ①장학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의 지원금에 의한다 ②장학기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고, 이율이 높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	제9조(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) ①시장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·지원하기 위하여 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 ②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,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,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③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하고, 당해년도 이자수입금의 범위내에서 지출한다 ④기금의 수입·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
제10조(장학금의 재원)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	제10조(회계공무원)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. 기금운용관 : 생활보호업무 담당국장 2. 기금출납원 : 생활보호업무 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
<신 설>	제11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

(제37회 - 총무 제3차 부록)

현 행	개 정 안
	<p>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 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</p>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	제12조(시행규칙) .....
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	.....

## 관련법령(발췌)

### [지방자치법]

- 제133조(재산 및 기금의 설치)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,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  
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 
③<생략>

### [지방재정법]

- 제29조(예산총계주의의 원칙)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.  
②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.  
③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세입·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.

- 제110조(기금의 운용등) ① ~ ② <생략>  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 
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 
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제115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.

### [지방재정법시행령]

제156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.  
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  
③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·지출·출납·보관의·절차와 공유재산·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고, 그의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 읍·면·동별 장학금 지급 현황

구 분	중 학 生			고 등 학 生		
	'98			'98		
	신청인원	지급인원	지급액 (천원)	신청인원	지급인원	지급액 (천원)
계	39	32	9,600	28	24	12,000
풍기읍	8	6	1,800	2	1	500
이산면	1	1	300	1	1	500
평은면	1	1	300	1	1	500
문수면	1	1	300	1	1	500
장수면	1	1	300	1	1	500
안정면	1	1	300	1	1	500
봉현면	1	1	300	1	1	500
순흥면	1	1	300	1	1	500
단산면	2	2	600	1	1	500
부석면	2	2	600	1	1	500
상망동	0	0	0	1	1	500
하망동	1	1	300	3	3	1,500
영주1동	3	3	900	3	2	1,000
영주2동	1	1	300	1	1	500
휴천1동	0	0	0	1	1	500
휴천2동	2	1	300	1	1	500
휴천3동	0	0	0	2	1	500
가홍1동	9	6	1,800	4	3	1,500
가홍2동	4	3	900	1	1	500